가평유치원 회계 세입·세출 예산서

예산 총칙

예산구분 : 추경2회

예산확정일자	2021-06-17	예산액	490,971,000

제1조 2019학년도 가평유치원회계 세입·세출예산총액은 세입·세출 각각 490,971,000원으로 하며 세입 · 세출의 명세는 “세입·세출예산서”와 같다.

제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초.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(수익자부담금)와 관할청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 다만, 목적지정 전입금, 보조금, 지원금교부 및 수익자부담금이 감액사유 발생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추후에 보고한다.

제3조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경기도공립학교회계규칙 제16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.

1. 교원연구비, 관리 및 직책 수당, 겸직수당
2.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
3. 각종 공과금